

의안번호	2216382
의 퇴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6.5.14.
추 계 번호	26B0477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500만원, 2031년 3,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9,300만원(연평균 3,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	12	12	12	12	12	60	12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33	—	—	—	—	33	7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0	20	20	20	20	100	20
추가재정소요	65	32	32	32	32	193	39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5.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제6조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4항)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의무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근로시간 단축 종합 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실근로시간의 현황과 전망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 3. 생산성 향상과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4.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 5.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2.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다만,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등 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휴가의 촉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설비·기술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정보 제공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동향·전망·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2조(조사·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3조(포상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주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2항)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종합계획 수립·홍보 및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기업 발굴 3.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실근로 시간 단축 지원 위원회 설치 등)	○	• 추계 – 본문참조
3	안 제6조(실근로 시간 단축 종합 계획의 수립)		
4	안 제7조(실태조사 실시)		
5	안 제8조(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	• 미대상(제1항) – 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휴대전화를 포함),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제정안은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연차 유급휴가 등 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휴가의 촉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안은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근무체계 개선·휴식 보장)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시행할 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조(실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설비·기술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항목별 지원내용 <table><tr><th>조항</th><th>지원내용</th></tr><tr><td>제9조제1항</td><td>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비용</td></tr><tr><td>제9조제2항</td><td>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재정</td></tr><tr><td>제9조제3항</td><td>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설비·기술</td></tr></table>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의 시행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원의 범위와 방식 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조항	지원내용	제9조제1항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비용	제9조제2항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재정	제9조제3항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설비·기술
조항	지원내용										
제9조제1항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비용										
제9조제2항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재정										
제9조제3항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설비·기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0조(민간 단체 활동 지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필요 비용의 규모를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우며, 지원대상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1조(정보 제공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동향·전망·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동향·전망·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사업의 내용과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에 시행할 상담 및 교육 관련 재정사업의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2조(조사·연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규모와 시행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13조(포상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실적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주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포상 기준 및 내용,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추산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계획 수립·홍보 및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의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

- 제정안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민간위원 수) 15인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소계(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서는 종합계획을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산하며, 용역단가는 2025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3,3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7년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 p.222.)

[표 4]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33	—	—	—	—	33	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근로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대상, 시기, 내용,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는 유사사례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산출

—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실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는 사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1) 임금실태 등 조사

— (용역예산) 2,000만원(2026년)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의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조사

* (실태조사 2)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 (용역예산) 2,000만원(2026년)

—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조사

[표 5]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0	20	20	20	20	100	2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